

☐ 어업권 이전인가신청서 ☐ 지 분 (제22조제1항 관련)				처리기간
				시·군·구 4일
신 고 인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-
	③ 주 소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· 리·동 번지		
④ 어업의 종류			⑤ 양 식 방 법	
⑥ 면 허 번 호			⑦ 포획·채취물, 양식물	
이 전 하 는 자	⑧ 성 명		⑨ 주민등록번호	-
	⑩ 주 소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· 리·동 번지		
이 전 받 는 자	⑪ 성 명		⑫ 주민등록번호	-
	⑬ 주 소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· 리·동 번지		
⑭ 이전하고자 하 는 지 분			⑮ 이전의 사유	
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어업권(지분)의 이전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. 어 업 권 자 (서명 또는 인) 어업권을이전받을자 (서명 또는 인)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
구 비 서 류				수 수 료
1.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.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				1,000원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

(뒷 면)

